

대기업 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설명회

2014. 5. 30

주요 일정

1. 신고제도 및 요건
2. 사후관리 요령
3. 지원제도
 - 3-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2 지방세 감면
4. 연구환경안전법
5. 질의응답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및 요건

제도의 기저

-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
-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일정수준을 갖추도록 요건화
- 신고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
-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 산업/경제 발전 기여

제도의 특징

- 법적 근거에 기반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업무위탁 기관 지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정제 : 등록제, 인증제와 차이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및 요건

설립 추이

구 분	1981	1991	2004	2010	2014.5
대기업	53	493	883	1,126	1,647
중소기업	-	708	9,387	20,659	28,353
계	53	1,201	10,270	21,785	30,000

최근 동향

- 소규모 중소기업 증가 : 연구원 5인 미만 52% / 요건 완화, 소규모창업 증가 등
- 지역편중 지속 : 수도권 65% * 대구지역 995개 / 인력수급 요인 등에 기인
- 제품개발 분야 집중 완화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21% 차지
- 소규모 면적 연구소 증가 : 30㎡ 이하 26% 차지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및 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교원·연구원창업 기업	2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의 소기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의 소기업	3명 이상
	중기업, 해외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명 이상

인적요건의 특징

- 연구전담요원 기준 적용 : 타 업무 겸직 금지
- 대표이사 등 연구소장은 겸직 허용(단,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
- 연구보조원, 관리직원도 등록이 가능하나 전담의 개념임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및 요건

연구전담요건 자격

구 분	제품개발 분야	산업디자인/지식서비스 분야 특례
대기업	○ 자연계 학사이상 + 해당연구분야전공 ○ 기사이상 자격증	○ 학사이상 + 해당연구분야 전공[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 ○ 해당연구분야 국가1급이상 서비스 자격
중소기업 특례	○ 자연계 학사이상 + 해당연구분야전공 ○ 기사이상 자격증 ○ 자연계 전문학사 + 2년이상 연구경력 ○ 산업기사 + 2년이상 연구경력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4년이상 연구경력 (1년이상 연구소/전담부서 경력포함)	○ 학사이상 + 해당연구분야 전공[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 ○ 해당연구분야 국가1급이상 서비스 자격 ○ 전문학사 + 해당 연구분야 전공 +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 해당연구분야 국가2급이상 서비스자격 +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 ○ 전문학사 +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및 요건

물적 요건

- 전용 공간
 - 연구개발에 배타적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
 - ※ 독립 공간 : 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
- 분리구역(파티션)이 가능한 경우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 연구공간 30^{m²} 이하
 - ※ 소기업에 한해 연구공간 30^{m²} 이하는 분리구역 인정(2014년 부터)
- 전용 기자재
 -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부대시설
- 부대시설
 - 연구전담요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연구소 주소지와 동일)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및 요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해당 업종 (16개)
소매
정보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위생서비스(산업)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산업)
교육기관(산업)
문화서비스(기타)
출판
영화 제작 배급
부가통신
광고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

특례 사항 (주 업종인 경우에 한함)

〈 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분야가 아니어도 나머지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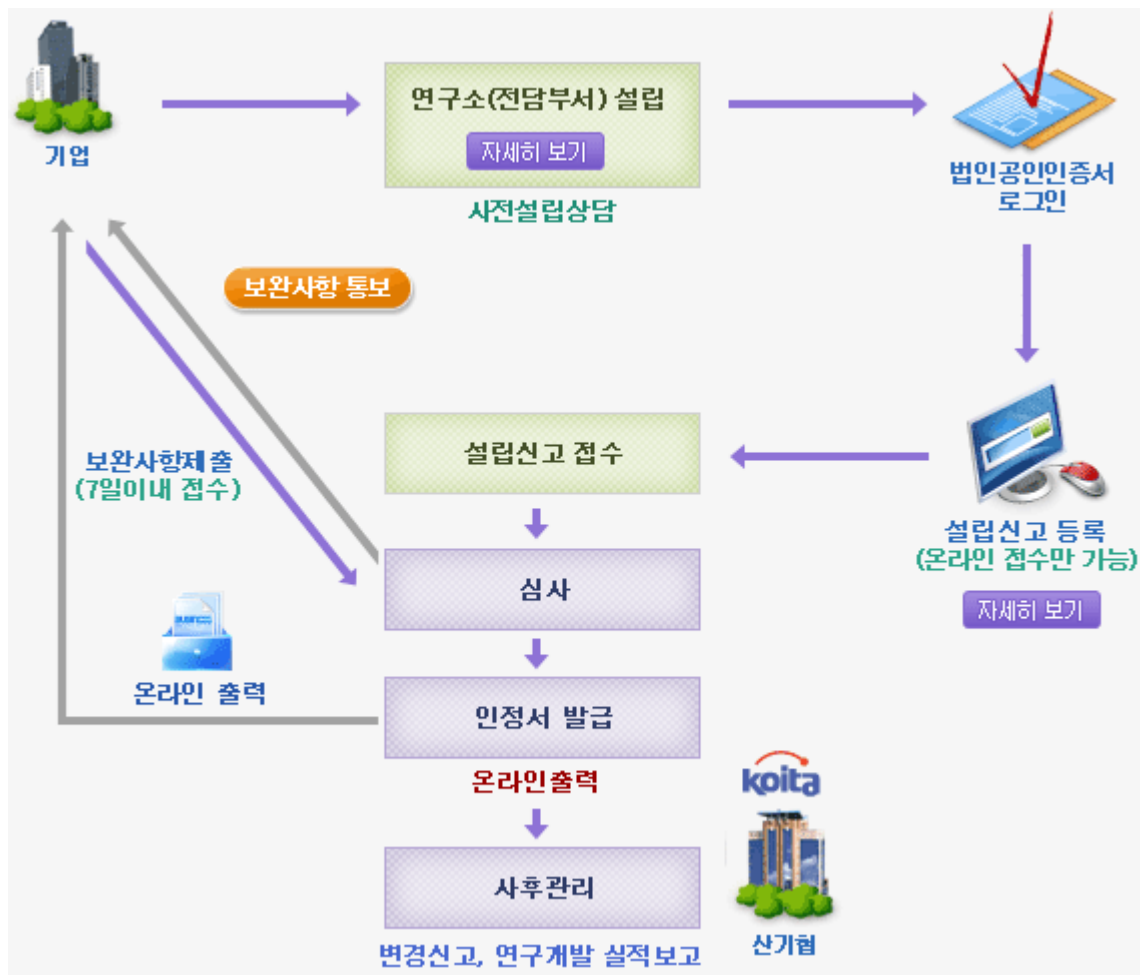
〈 연구공간 요건 〉

30㎡를 넘지 않는 경우 칸막이로도
연구공간 인정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및 요건

온라인 신고

신고 사이트: www.rnd.or.kr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및 요건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연구소검색 ○ 통합검색



신규설립하기

변경신고하기

정보서비스

문의하기

자료실

사후관리

공인인증센터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변경신고,
사후관리 등을 안내합니다.



기업홍보제품

제품검색 >

제품등록 >



만지락 유점도..



콘텐츠 반응형..



3차원형상지그..



멀티형 실시간..

공지사항

+ more

201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 2014-05-15
[공고 KOITA-14-0019] 기업부설연.. 2014-05-13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2014-05-13
[공고 KOITA-14-0017] 기업부설연.. 2014-04-25

처리현황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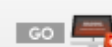
연구소/전담부서
정기상담회



인증서
출력하기



부설연구소
신고센터



신규설립

바로가기 >

작성요령보기

변경신고
(신고내역보기)

바로가기 >

작성요령보기

연구소직원현황 등 신고된내역 보기는?

01.

변경
신고하기

02.

로그인

03.

변경신고
(신고내역
보기)

04.

연구소
인정번호
입력

05.

신고내역
보기

연구소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이행사항 안내>>

연구실안전정보망

기업연구소
통계현황

기업연구소
검색

기업연구소
상세검색

공인인증서 갱신

원격지원

프로그램 수동설치

대상 및 기간 | 연구소 전담부서용 인증서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1개월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하는 곳 | www.tradesign.net

갱 신 요 금 | 20,000원 문 의 처 | 1566-2119



2.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요령

변경신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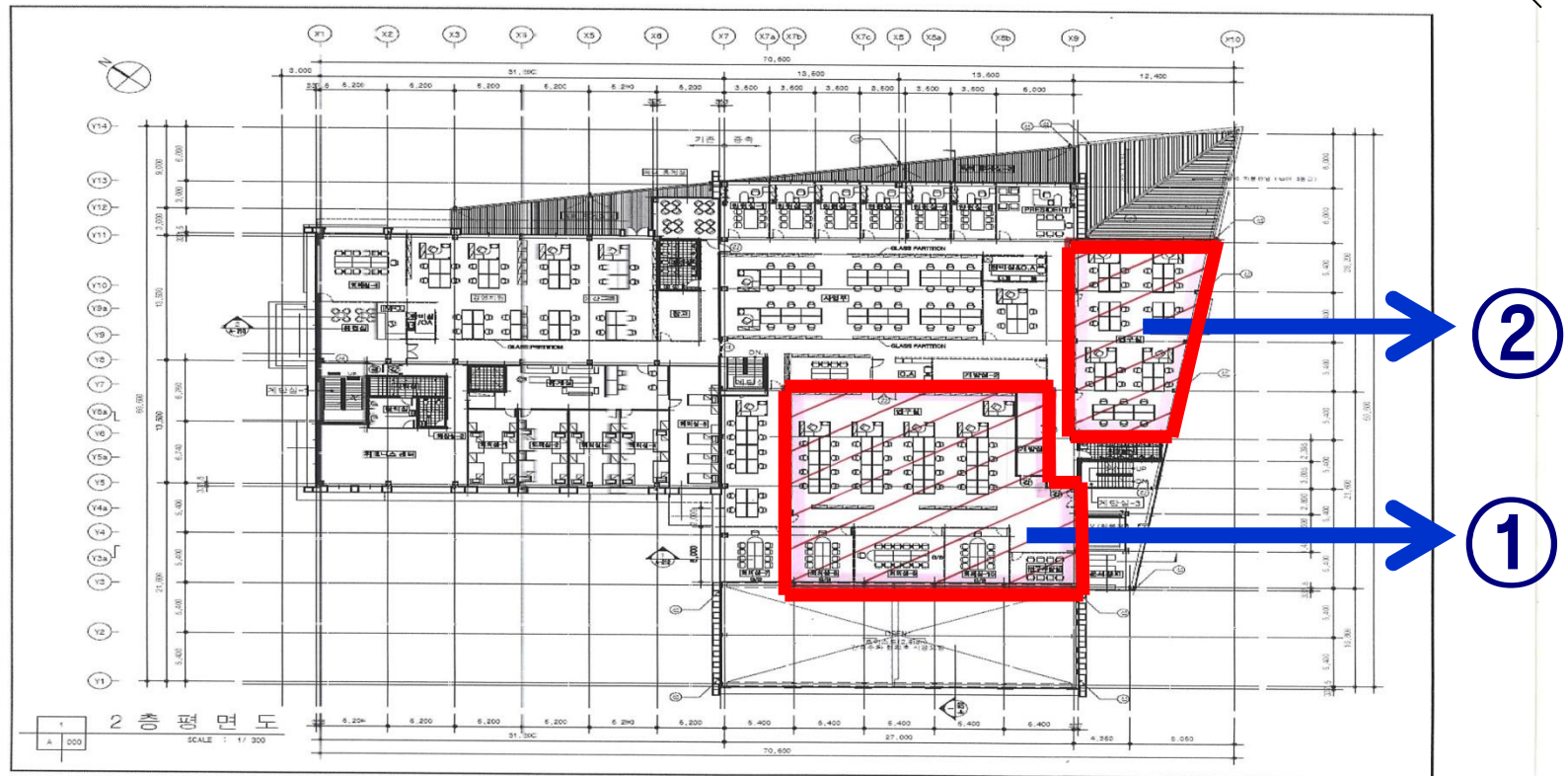
- 회 사
 - 소재지변경, 사명, 대표자, 매출액, 회사규모(대/중견/중/소 구분)
- 연구소
 - 소재지변경, 레이아웃, 연구분야, 연구면적, 연구기자재
- 연구원
 - 연구원 변경(입사, 퇴사, 연구소로 신규발령 등)
- 인정조건
 - 중견기업 확인 기간 종료, 벤처 유효 기간 종료, 창업3년 경과 등

변경신고 방법

- 신고 사이트(w w w . r n d . o r . K r) 통해 온라인 신고
- ※ R&D 조세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상시 변경신고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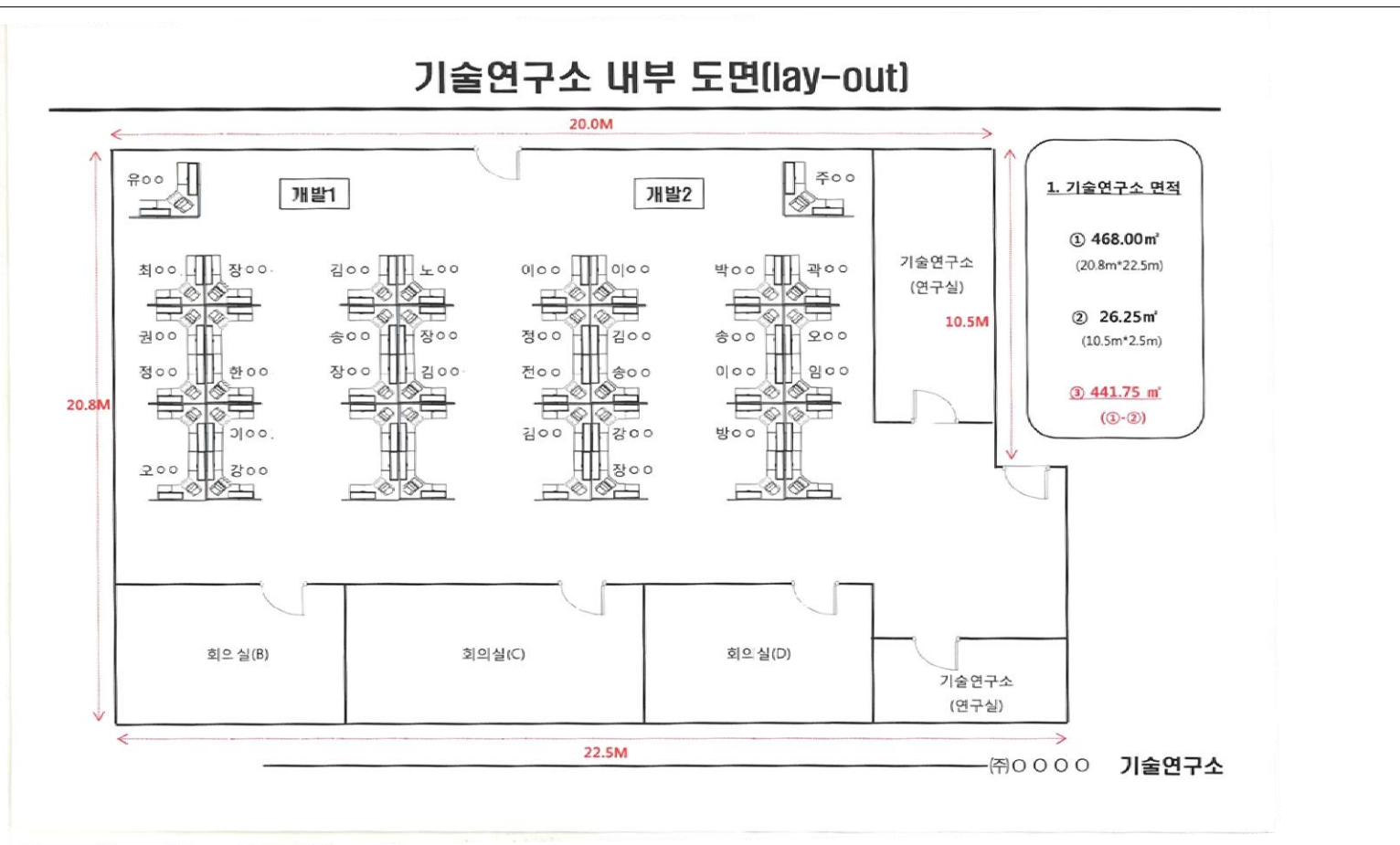
2.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요령

도면 예시 : 전체도면



2.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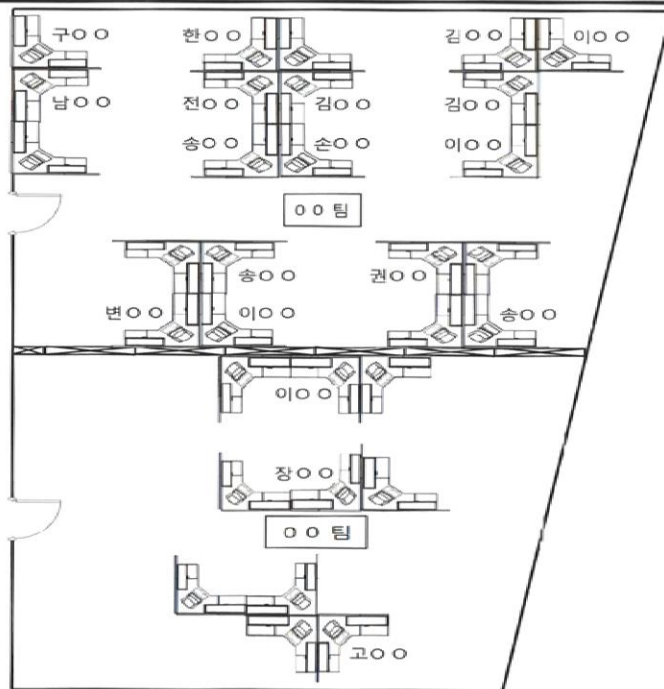
도면 예시 : 상세도면 1



2.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요령

도면 예시 : 상세도면 2

기술연구소 내부 도면(lay-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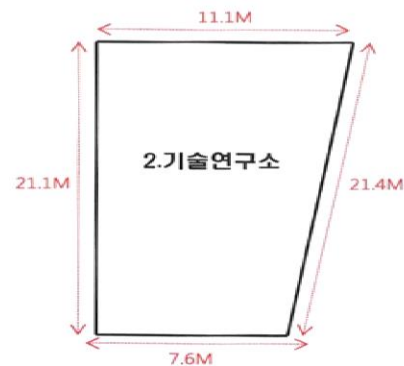


2. 기술연구소 면적

① 직사각형 : $21.1\text{m} \times 7.6\text{m} = 160.36\text{m}^2$

② 직삼각형 : $21.1\text{m} \times 3.5\text{m} \div 2 = 36.92\text{m}^2$

③ 총 넓이 : $160.36\text{m}^2 + 36.92\text{m}^2 = 197.28\text{m}^2$



(주) ○ ○ ○ 기술연구소

2.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요령

도면 예시 : 면적계산표

건물명	층수	바닥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	면적계산	용도	근무 부서명	근무 연구원수	비고(신축, 기존공간 등)
실험동	1층	1500	1500	반도체 실험	C기술팀	50	기존공간
	2층	1500	1500	전기실험	-	-	기존공간
사무동	지하1층	800	800	연구원 사무	S/W개발1팀	35	신축
	1층	1000	500(10m×50m=500m ²)	연구원 사무	S/W개발2팀	100	신축
	2층	1000	1000	연구원사무	DP개발부	21	이전 가전연구소 사용공간

2.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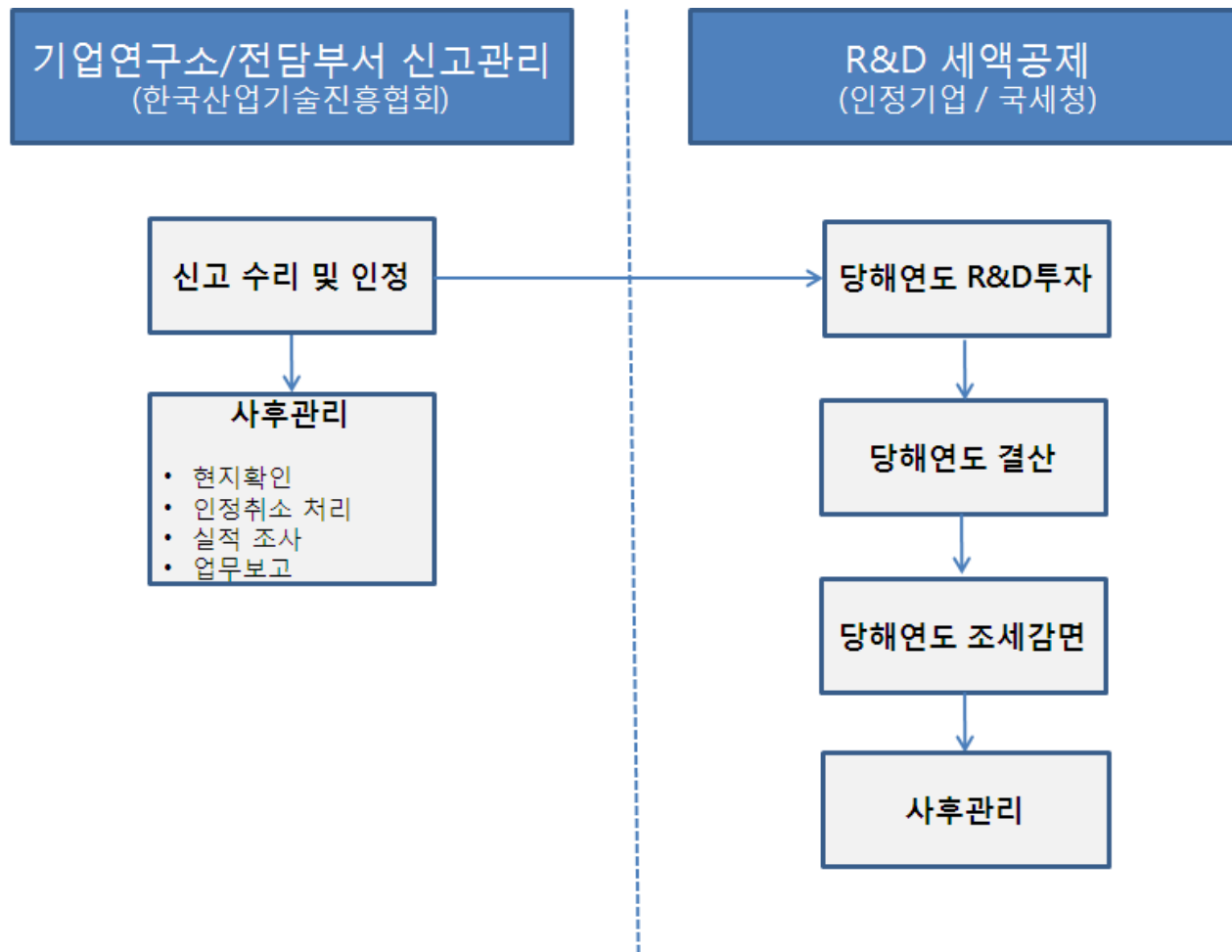
동일 소재지 연구소 분류

- 1개 소재지에서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 K SIC[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체계에서 중분류 첫째 2자리 수가 달라야 함

연구소명	코드NO	세부 내용
전자 연구소	31321	LCD 모니터 제조
태양광 연구센터	20499	태양열판 제조
화학연구소	29100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3.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R&D 세액공제 체계



3.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R&D 세액공제 제도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중소기업] 해당연도 일반연구개발비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발생분의 50% ▪ [중견기업] 해당연도 일반연구개발비의 8% 또는 전년대비 증가발생분의 40% ▪ [대기업] 해당연도 일반연구개발비의 3~4% 또는 전년대비 증가발생분의 40%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 재산세 면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 연구시험용시설, 신기술사업화용자산 투자금의 10%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 매년 고시되는 대상품목(現20개)을 관세액의 80%까지 감면

3-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근거

-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범위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일반연구개발비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발생분의 50%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 해당연도 일반연구개발비의 8% 또는 전년대비 증가발생분의 40%
-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 해당연도 일반연구개발비의 3~4% 또는 전년대비 증가발생분의 40%

3-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불성실 추정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당과세 신고 : 40%
	일반과세 신고 : 10~20%

3-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례

- 주식회사 △ △ △ 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해 감면 받았으나,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279의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과다 신청
- ➔ 감사원은 동사가 연구개발 외 비용을 세액공제로 신청했다고 판단, 122억원을 추징세액으로 확정했고, 주식회사 △ △ △ 는 법인세비용으로 반영/납부

3-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관련근거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범위

- 토지(건축물)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 면제대상 아님[직접사용에 한함])

3-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지방세 감면

-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불성실 추징

- 취득세 추징대상의 경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미신고시, “20%의 가산세 + 31일째 부터 1일당 3/10,000의 가산세” 추가부과
- 재산세의 경우,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사례

- 주식회사 000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 후 4년 내에 타 부서 직원 휴게실+ 등의 타 용도로 연구소 신고 공간을 사용.
- ➔ 관할 세무서는 주식회사000가 다른 용도로 연구소 신고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가산세 포함)

3-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타사례

- 변경신고 등을 통해 연구소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신고면적으로 재산세를 감면
- 부대시설로 신고한 공간을 연구원 외 타 부서 직원이 공동사용
-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전용공간으로 신고
- 부대시설 중 기숙사를 연구전담요원 전용이 아닌 게스트하우스 등 타용도 활용

3-3. 기타 지원제도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 매년 고시되는 대상품목(현재 220개 품목)을 관세액의 80%까지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산기협회관 1층

담당자 : 연구소인정단 홍성철 과장

전화 : 02-3460-9012 이메일 : sc0215@koita.or.kr

팩스 : 02-3460-9019